

## 수업관리에 관한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수업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수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업시간)** ①주당 3시간 미만의 교과목은 주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, 주당 3시간이상 이룬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75분으로 한다. (개정)  
②75분을 초과하여 연속해 강의를 할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실습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3조(강의배정의 기준)** ①교양과목은 합반수업으로 배정하며, 개설되는 강의는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주·야간 개설과목 중 동일한 과목은 동일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전공과목은 당해학과 전임교수에게 우선 배정한다. 특히 전공과목 배정의 경우 최종학위 논문 또는 연구실적의 대부분이 전공과 일치하는 전임교수에게 우선하여 배정한다.

④전임교수의 강의배정은 책임강의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임교수중 책임강의 시간에 미달되게 배정될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하여 당해학과의 전공과목을 우선하여 배정한다.

⑤전임교수의 책임강의 시간이 부족함에도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한 경우 등 학사조정이 필요한 경우, 교무처장이 조정한다.

⑥전임교원이 정년 등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학과 전체교원의 협의를 거쳐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배정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강의일의 배정)** ①전임교수의 강의일은 연구일을 제외하고 주 4일 이상으로 분산 배정하여야 한다.

②전임교수의 개인별 연구일은 소속학과 다른 교수의 연구일과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.

3-3-6~2 제3편 행 정

**제5조**(강의시간의 배정) ①3학점(3시간) 이론전공 주간 수업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을 나누어 2일 이상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간강사가 3시간 연속하여 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**(수업계획서 제출) 매학기 교과목담당교수(시간강사 포함)는 학기중의 수업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수강신청 실시전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**(영어강의) ①대상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교과목으로 한다. 단, 영어 회화수업과 원어민에 의한 수업은 제외 한다.(신설 2012.08.10., 개정 2019.02.21.)

②주교재(원서), 수업계획서, 강의자료, 시험문제 등은 반드시 원어로 작성, 게시하여야 한다.

③학생들의 어학능력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되 반드시 전체 강의 중 70%이상은 영어로 강의 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02.21.)

④2006학년도 1학기 이후 임용된 신입교원은 1강좌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. 단, 학부의 교양이나 교직과목만 담당하는 교원,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 국가 자격을 필요로 하는 학과의 교원은 각각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정 2018.02.22.)

**제8조**(시험) ①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부정기시험은 각 교과목의 수업시간 또는 담당교수가 지정한 시간에 실시한다.

**제9조**(강의 개선) (신설 2017.09.26.) ①강의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강좌별로 수업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를 개선하여야 한다.

②수업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은 강의 개선을 위하여 수업의 내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방법 및 학습평가 등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는 반드시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